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

NICE Investors Service
Code of Conduct

2023.03.24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



목 차

[전 문]

[용어의 정의]

1. 신용평가과정의 품질 및 공정성	4
2. 신용평가회사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8
3.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투자자 등 신용등급 이용자에 대한 책임	11
4.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임직원 연수	14
5. 공시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14

[전 문]

NICE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NICE신용평가')는 舊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現주식회사 NICE 홀딩스)의 평가사업본부에서 분사하여, 국내 신용평가시장을 개척해 온 신용평가회사로서 자본시장에 가치 있는 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하여 왔으며, 활발한 연구활동 및 신상품개발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함에 있어 객관성, 독립성, 일관성, 투명성, 신뢰성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본부의 임직원 모두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2004년 12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하고 2008년 5월, 2015년 3월 개정하여 전세계 신용평가기관에게 적용을 권고한 기본행동강령(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 이하 IOSCO Code)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수용하며, 이를 위해 NICE신용평가의 'Code of Conduct'(이하 '본 Code')를 개정하여 이에 공표한다.

본 Code는 신용평가회사로서 NICE신용평가가 확보하고자 하는 신용평가과정의 품질과 성실성,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그리고 투자자, 평가대상법인 및 시장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다.

본 Code는 IOSCO Code 각 조항의 취지를 반영하고 이의 실천의지 및 실행정책을 담고 있으며, 세부적인 실행방법 및 절차의 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내규에 이를 반영하였다.

NICE신용평가의 이사회 및 임직원은 본 Code를 전적으로 지지·수용하고 본 Code 및 관련 법규와 내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더욱 신뢰받는 신용평가회사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어의 정의]

본 Code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정 주제와 관련된 용어는 해당 장에서 기술한다.

□ 신용평가업무

금융투자상품, 기업 및 집합투자기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무

□ IOSCO Code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IOSCO)의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가 2004년 12월 23일 공표하여 신용평가사들에게 적용을 권고한 기본운영방침이다. 정식명칭은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이다. IOSCO는 각국의 신용평가기관에게 IOSCO Code 각 조항의 취지를 반영한 기본운영방침의 제정 및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와 메커니즘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 본 Code

평가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NICE신용평가 Code of Conduct’를 줄여서 지칭한다.

□ 신용등급

특정실체, 신용약정, 채무, 금융투자상품이나 이의 발행자의 신용도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의견. 신용등급은 사전에 정립 및 정의된 체계에 따라 표시되며, 현재 NICE신용평가가 채용하고 있는 등급체계 및 정의는 웹사이트(www.niceratin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용평가활동

최초 등급 부여, 기존 등급의 유지 및 확인, 상향 및 하향조정, 기존등급의 철회, 효력정지 및 감시(Credit Watch) 목록에의 등재, 전망(Outlook) 부여 및 변경 등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의사결정 혹은 의사표시행위로서 관련 보고서 작성, 평정위원회에서의 토의 및 표결 등 물리적, 절차적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

□ 신용평가전문인력

NICE신용평가에 소속되어 신용등급의 최초 부여, 변경, 취소 등 신용평가활동과 신용평가활동의 논리적, 실증적 기반이 되는 평가방법론 및 평가기준, 부도율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평정위원을 포함한다. 신용평가전문인력은 관련 법규, NICE신용평가의 내규 및 본 Code에 의거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임직원

NICE신용평가와 고용관계(비정규직, 시간제 등 고용의 형태를 불문한다)를 맺고 근무하는 직원을 말한다.

□ 경영진

NICE신용평가의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서 집행간부를 포함한다.

□ 금융투자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증권과 파생상품을 말한다.

1. 신용평가과정의 품질 및 공정성

신용평가는 특정 실체 혹은 채무의 미래상환능력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분석 및 판단이며, 이를 상대적인 체계를 가지는 신용등급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NICE신용평가가 제시하는 신용등급은 투자를 권유하거나 평가대상법인의 재정상태 또는 원리금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신용등급은 대상채권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예측정보의 하나로서 제공되며, 투자자는 스스로의 판단하에 투자대상의 매매, 보유 등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NICE신용평가는 객관적이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평가조직 및 평가절차를 구성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문서화 및 규정화한다. 평가조직 및 평가절차의 구성에 있어 평가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요소로 평가의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평가과정에 선입견, 편견 혹은 과도한 주관의 개입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NICE신용평가는 산업(corporate),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평가일반론 등으로 크게 구분된 평가방법론과 세부적인 섹터 및 이슈와 관련된 평가방법론을 구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평가방법론을 제·개정 및 개발하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성적인 요소와 정량적인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등급 결정에 이르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신용등급에 대한 일정형태의 객관적인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평가방법론 또한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이고 주요한 평가방법론 및 평가기준은 평가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평정위원회는 이를 적용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한다.

A. 신용평가 과정의 품질

- 1.1 NICE신용평가는 체계적이며 가능한 한 과거 경험에 기초하여 일정 형태의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신용등급을 도출할 수 있는 신용평가방법론(이하 '평가방법론')을 마련하여 사용한다.
- 1.2 NICE신용평가는 평가방법론에 따라 평가과정에서 획득한 제반 정보를 충실히 분석하여 신용등급 및 분석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 1.3 NICE신용평가는 적합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신용등급 결정시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수집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 1.4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와 관련된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평가대상법인의 비협조로 신용평가를 위한 자료가 부족하여 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의 수행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신용등급 부여를 자제한다.
- 1.5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하는 NICE신용평가의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평가방법론을 일관성있게 적용한다.
- 1.6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 채무자 및 채무의 신용위험에 대해 적용할 신용등급체계를 기호화하고, 이를 일관성있게 정의한다.
- 1.7 신용등급은 NICE신용평가가 부여하는 것으로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신용평가전문인력 개인 혹은 개별 부서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 1.8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 또는 채무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있어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신용평가전문인력을 배치한다.

B. 공시 이후 신용등급의 사후관리

- 1.9 NICE신용평가는 관계 법규와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신용평가 기록을 보관한다.
- 1.10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신용등급 및 신용평가보고서가 이용자를 오도하는 내용을 담지 않도록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C. 신용평가 과정의 성실성

- 1.11 NICE신용평가는 고품질의 신용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수행한 업무량 대비 보유 신용평가전문인력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1.12 NICE신용평가는 신규 신용평가서비스의 실시, 기존 평가대상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금융상품의 평가 등에 대한 정책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정책부서를 운영한다.
- 1.13 NICE신용평가는 사용중인 평가방법론과 평가모델 및 이에 대한 주요한 변경사항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 1.14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참여하는 신용평가전문인력을 선정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되, 신용평가과정에서의 편향을 방지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 1.15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효력이 존재하는 동안 신용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및 재원을 할당하고,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1.15.1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용등급을 검토한다.
- 1.15.2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규에 따라 신용등급 변경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신용등급을 검토한다.
- 1.15.3 정기 및 수시 검토 결과 신용등급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 1.15.4 합리적인 기간 내에 관련 신용등급에 관한 평가방법론, 평가모델 또는 주요 평가 가정의 변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적용한다.
- 1.16 NICE신용평가가 최초 신용등급 결정과 사후관리에 대해 별개의 분석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조직은 필요한 전문성 및 자원을 갖추어 각각의 기능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1.17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서의 배포, 신용등급의 취소 및 철회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D. 신용평가과정의 공정성

- 1.18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에 대해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한다.
- 1.19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엄격한 윤리기준과 공정성기준을 준수한다. NICE신용평가는 이를 저해하는 임직원이 고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 1.20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에게, 특정 신용등급에 대해 평정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이전에, 특정신용평가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확약 또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
- 1.21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신용평가 또는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잠재적인 신용등급에 대한 약속 또는 위협을 하지 않는다.

1.22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대상법인 또는 채무자의 활동에 대해 제안 또는 권유를 하지 않는다. 동 활동에는 평가대상법인 또는 채무의 법적 구조, 자산 및 부채, 영업활동, 투자계획, 자금조달, 사업결합 및 구조화 금융상품의 설계 등이 해당된다.

1.22.1 단, NICE신용평가와 그 임직원이 본 금지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신용위험 평가를 위해 (1) 당해 채무자 또는 채무에 대한 특정 사실이나 특성 및 채무자가 제안한 수정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과 (2) 당사의 평가방법론이 채무자 또는 채무에 적용될 때 신용평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련의 논의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1.23 NICE신용평가는 NICE신용평가 및 임직원이 본 Code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한다.

1.23.1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의 본 Code 및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한다.

1.23.2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본 Code 및 관계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된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23.3 NICE신용평가는 관계 법규 및 내규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준법감시인의 보고체계와 보수는 신용평가업무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1.24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여 임직원 또는 관계인이 불법적, 비윤리적, 또는 본 Code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이를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한다. 준법감시부서는 법규 또는 내규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취하며, 보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복행위나 위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신용평가회사의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A. 총칙

2.1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NICE신용평가,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에게 미칠 잠재적 영향(경제적, 정치적, 기타 영향 포함)을 고려하지 않

는다.

- 2.2 NICE신용평가와 임직원은 전문적 판단과 성실한 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물론 외형적으로도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한다.
- 2.3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용등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만을 고려한다.
- 2.4 NICE신용평가가 부여하는 신용등급은 NICE신용평가(또는 관계회사)와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또는 관계회사) 및 기타 당사자 간 사업관계의 존재 여부 혹은 장래 사업관계의 구축 가능성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 2.5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와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를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며, 가능한 경우 물리적으로도 분리한다.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신용평가 이외의 업무를 운영할 경우에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한다.

B. 신용평가회사의 정책, 절차, 통제 및 공시

- 2.6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의 판단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확인하고 제거·관리하는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상충 관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상충관리위원회’를 운영한다.
- 2.7 NICE신용평가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공시할 때에는 완전하고, 적시에,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 2.8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과 체결한 수수료 약정의 일반적인 성격을 공시한다.
 - 2.8.1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로부터 신용평가업무 또는 부수업무와 관련없는 보수를 수령한 경우에는 동 내용을 공시한다.
 - 2.8.2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관계회사 포함)로부터의 수수료 수입이 NICE신용평가 연간 매출의 10% 이상일 경우 이를 공시한다.
- 2.9 NICE신용평가는 구조화금융상품의 발행자 및 자산보유자가 본 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권고한다.

2.10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업무와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지 않는다.

2.11 신용평가대상이 NICE신용평가를 감독하는 직능을 수행하는 경우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와 감독대응 업무에 각각 별도의 직원을 배치한다.

C. 신용평가회사 임직원의 독립성

2.12 NICE신용평가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의 보고라인 및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2.12.1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전문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상을 그가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으로부터 받는 수익과 연동하지 않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2.12.2 NICE신용평가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용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직원에게 대한 보상 정책 및 절차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2.13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분리하여 조직을 구성하며, 신용평가전문인력은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수수료 협의 및 매출채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2.14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14.1 임직원(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단, 펀드, 수익증권, 인덱스상품 등 개별 증권에 대한 운용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2.14.2 임직원(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신용평가대상과 관련된 업체가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소유로 이해상충이 초래될 수 있거나 초래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경우

2.14.3 임직원(그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이 최근에 신용평가대상에게 고용된 적이 있거나 신용평가대상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초래될 수 있거나 초래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경우

2.14.4 임직원의 친척(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자녀 또는 형제자매)이 현재 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2.14.5 기타 신용평가대상과의 현재 또는 과거의 관계로 인해 이해상충이 초래될 수

있거나 초래되는 것으로 인지될 수 있는 경우

- 2.15 NICE신용평가의 신용평가전문인력(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은 자신이 평가한 신용평가대상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를 하여서는 않된다. 단, 펀드, 수익증권, 인덱스상품 등 개별 증권에 대한 운용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16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NICE신용평가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금전, 물품 또는 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할 수 없고, 내규에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 2.17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가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과 사적인 관계에 있는 등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준법감시부서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준법감시부서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2.18 신용평가전문인력이 퇴직하면서 동 신용평가전문인력이 관여한 신용평가대상이나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거래했던 금융회사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NICE신용평가는 동 신용평가전문인력의 과거 업무를 검토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3.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투자자 등 신용등급 이용자에 대한 책임

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 3.1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의 본질 및 적용 한계에 대한 투자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NICE신용평가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이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한다.
- 3.2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절차와 평가방법론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 투자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가 신용평가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3.3 NICE신용평가는 평가방법론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NICE신용평가 웹사이트

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매체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중요 변경내용을 공시한다.

3.4 NICE신용평가는 무의뢰 신용평가를 수행하여 신용등급을 공시할 경우, 신용등급의 부여와 관련한 정책 및 절차를 공시한다.

3.5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서의 배포, 신용등급의 취소 및 철회와 관련된 정책 및 절차를 공시한다.

3.6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분류 및 정의, 부도의 정의 등의 정보를 공시한다.

3.7 NICE신용평가는 별도의 신용등급 식별표식을 사용하여 구조화 금융상품 등급을 다른 신용등급과 구분한다.

3.8 NICE신용평가는 투자자를 포함한 평가대상법인, 주관회사, 차주 등 거래참가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 등에게 관련 채무자 신용등급(기업, 지자체 등) 또는 채무신용등급 평가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한다.

3.9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부여 혹은 조정 전에 평가대상법인에게 신용평가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및 고려사항에 대해 알리고 정확한 신용등급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3.9.1 NICE신용평가와 신용평가전문인력은 평가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평가대상법인에게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평가대상법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동 의견수렴의 정도 및 형식은 달리할 수 있다.

3.9.2 NICE신용평가는 평가절차가 완료되면 공시 이전에 평가대상법인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며, 평가대상법인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재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3.9.3 신용등급의 부여 또는 조정 이전에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및 고려사항에 대한 평가대상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가대상법인에게 최대한 빨리 이를 통지하고 통지가 지연된 사유를 설명한다.

3.10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결과를 적시에 공시한다.

3.11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결과를 공시할 때 모든 정보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3.12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 결과를 공시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내용을 명시한다.
- 3.13 NICE신용평가는 신용평가의 적용 한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각 평가의견의 특징과 한계, 평가대상법인, 자산보유자 또는 주관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검증 여부 등을 명시한다.
- 3.14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최근 등급확정일 및 직전 등급부여일을 명시한다.
- 3.14.1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을 공시할 때 신용등급 결정에 사용된 주요 평가방법론, 평가방법론 버전, 평가방법론을 찾아볼 수 있는 위치를 명시한다.
- 3.14.2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이 두 개 이상의 평가방법론에 기초하거나, 주요 평가방법론만 검토하여 투자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가 신용등급의 중요한 측면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한다.
- 3.15 NICE신용평가는 구조화 금융상품 평가시 발행자 또는 자산보유자가 동의한 경우 구조화 금융상품의 손실가능성 및 현금흐름분석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금융시장 전문가가 평가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NICE신용평가는 기초적인 평가 가정이 수정될 경우, 가정 변경에 대한 신용등급의 민감도를 공개할 수 있다.
- 3.16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의 부여 혹은 조정시 그 사유 및 근거를 제시·설명한다.
- 3.16.1 본/정기/수시평가에 의한 등급부여 및 조정시 평가사유 및 근거를 설명하는 평가의견서를 NICE신용평가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며, 필요시 동 보도자료를 관련 매체에 제공한다.
- 3.17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검토에 필요한 자료입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공시한 신용등급을 계속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여한 신용등급을 철회 또는 유보한다. 신용등급의 철회 또는 유보를 공시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최근 등급확정일을 명시한다.
- 3.18 NICE신용평가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및 신용등급 이용자가 다른 신용평가회사의 실적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간부도율, 평균누적부도율표 및 신용등급 변화표를 공시한다.

B. 기밀정보의 관리

3.19 NICE신용평가는 기밀정보 및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3.19.1 NICE신용평가는 평가대상법인이 제공한 기밀정보를 신용평가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다만 기밀유지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3.19.2 NICE신용평가의 임직원은 기밀유지계약을 철저히 준수하며, 별도의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평가대상법인이 기밀유지를 요청한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는 기밀을 보호한다.

3.19.3 법규에 의거 감독기관, 법원, 검찰 등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20 NICE신용평가는 기밀정보 및 중요한 미공개정보의 취급과 사용을 규제하는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3.21 NICE신용평가는 기밀정보 및 중요한 미공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문을 하는 등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4.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임직원 연수

4.1 본 Code는 NICE신용평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다.

4.2 NICE신용평가는 준법감시부서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통제체제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4.2.1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NICE신용평가 본 Code의 절차 준수 여부 실태를 점검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Code of Conduct 이행실태보고서"를 공시한다.

4.3 NICE신용평가는 NICE신용평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및 관리한다.

5. 공시 및 시장참여자와의 소통

- 5.1 NICE신용평가는 본 Code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한 공시사항을 완전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적시에, 그리고 투자자 및 신용평가 이용자가 이해가능하도록 공시한다.
- 5.2 NICE신용평가는 IOSCO의 신용평가사 활동원칙(IOSCO Principle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Credit Rating Agencies) 및 기본행동강령(IOSCO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의 각 조항을 지지하며, 동 조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NICE신용평가는 사업방식과 모범사례 및 국내 감독기관이 채택한 법규에 좀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IOSCO의 기본행동강령의 조항을 일부 조정하였다. 그러한 조정 사항들은 NICE신용평가가 매년 공시하는 "Code of Conduct 이행실태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 5.3 NICE신용평가의 준법감시부서는 시장참여자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불만사항(기밀유지 조건의 불만사항 포함)을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불만사항을 검토하여 경영진 보고의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 5.4 NICE신용평가는 웹사이트(www.nicerating.com)에 (1) 본 Code of Conduct, (2) 사용 중인 방법론에 대한 설명, (3) 과거 평가실적에 대한 Rating Performance, (4)본 Code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등을 공시한다.

[부록] IOSCO Code of Conduct Fundamentals와 본 Code와의 연결 관계

IOSCO Code	본 Code	IOSCO Code	본 Code
1.1	1.1	2.12(2.12.a~2.12.b)	2.12(2.12.1~2.12.2)
1.2	1.2	2.13	2.13
1.3	1.3	2.14(2.14.a~2.14.g)	2.14(2.14.1~2.14.5)
1.4	1.4	2.15	2.15
1.5	1.5	2.16	2.16
1.6	1.6	2.17	2.17
1.7	1.7	2.18	2.18
1.8	1.8	3.1	3.1
1.9	1.9	3.2	3.2
1.1	1.1	3.3	3.3
1.11	1.11	3.4	3.4(3.4.1~3.4.2)
1.12	1.12	3.5	3.5
1.13	1.13	3.6	3.6
1.14	1.14	3.7	3.7
1.15(1.15.a~1.15.e)	1.15(1.15.1~1.15.4)	3.8	3.8
1.16	1.16	3.9	3.9(3.9.1~3.9.3)
1.17	1.17	3.10	3.10
1.18	1.18	3.11	3.11
1.19	1.19	3.12	3.12
1.2	1.2	3.13	3.13
1.21	1.21	3.14	3.14(3.14.1~3.14.2)
1.22	1.22(1.22.1)	3.15	3.15
1.23(1.23a~1.23c)	1.23(1.231~1.23.3)	3.16	3.16
1.24	1.24	3.17	3.17
2.1	2.1	3.18	3.18
2.2	2.2	3.19(3.19.a~3.19.d)	3.19(3.19.1~3.19.3)
2.3	2.3	3.20	3.20
2.4	2.4	3.21	3.21
2.5	2.5	4.1	4.1
2.6(2.6.a~2.6.e)	2.6	4.2	4.2
2.7	2.7	4.3	4.3
2.8(2.8.a~2.8.b)	2.8(2.8.1~2.8.2)	5.1	5.1
2.9	2.9	5.2	5.2
2.10	2.10	5.3	5.3
1	2.11	5.4	5.4

○ 유의사항(안)

본 Code는 선언적 의미의 기본행동강령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ICE신용평가(주)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투자상품, 금융계약 또는 발행주체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른 독자적인 의견이며, NICE신용평가(주)가 외부에 제공하는 보고서 및 연구자료(이하 “발간물”)는 상대적인 신용위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위험을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의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의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미래의 채무불이행 및 손실 가능성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으로 예측정보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되고 있으며, 예측정보는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 등에 따라 실제 결과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미래의 신용위험에 대한 NICE신용평가(주)의 독자적인 의견으로, 특정 유가증권의 투자의사결정(매매, 보유 등)을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등급과 발간물은 정보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이용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보이용자들은 각자 유가증권, 발행자, 보증기관 등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에 활용하고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하는 정보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회사 제시자료 및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하여 분석, 인용하고 있으며, 발행주체로부터 제출 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지 않았으며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평가 대상인 발행주체와 그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신용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CE신용평가(주)는 자료원의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자체적인 실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 평가의 특성 및 자료원의 제한성, 인간적, 기계적 또는 기타 요인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NICE신용평가(주)는 신용등급 결정 시 활용된 또는 발간물에 주요 판단근거로서 제시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정확성, 적합성 또는 충분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정보의 오류, 사기 및 허위, 미제공 등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NICE신용평가(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용등급 및 발간물 정보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NICE신용평가(주)에서 작성한 발간물에 수록된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NICE신용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NICE신용평가(주)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정보의 무단 전재, 복사, 유포(재배포), 인용, 가공(재가공), 인쇄(재인쇄), 재판매 등 어떠한 형태든 저작권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금합니다.